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에 대하여



남 하 욱 연구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지금까지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한 제품안전관리 체계는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유통·사용 단계에서 위해제품에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규정은 제품안전 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인 시장감시를 위한 제품 리콜, 사고제품의 조사 및 언론 공표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제품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리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한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행정조치 등이 다소 소극적인 경우도 있었으며 통합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2010.2.4)되고 2011.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품안전 기본법에서 제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제1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1~13)에서는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자,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참여 등 4대전략 17개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4~'16)에서는 제1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제품전주기(설계·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감시강화, 제품안전관리제도 선진화,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소통·협력 증진 등 4대 추진 전략과 20대 안전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관리 등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시장감시강화	① 20대 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 ② 리콜처분 확대 및 이행률 제고 ③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 ④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제품안전관리제도 선진화	①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 ②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③ 안전기준 제·개정 시스템 개선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①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②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③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 ④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
소통·협력 증진	① 정부·사업자·소비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사업자·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③ 국제협력 확대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 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4.2월에 확정된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감시강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20대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조사는 물론,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리콜실적 등을 토대로 중점관리 대상 품목을 재평가하여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	
공 산 품	전기용품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재생타이어, 생활화학 가정용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스포츠용구명복, 접착제, 멀티슈(10개 품목)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메트,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형광등용 안정기,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형광등기구, LED등기구, 백열등등기구(10개 품목)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기업 계도 차원에서 취하였던 자발적 개선 조치를 축소하고 리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언론공표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리콜 된 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를 위해 제품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명, 기업명, 지역별 검색을 통해 제조사, 출고현황, 인증일시, 검사항목, 리콜이력 등을 확인 가능한 제품이력 추적 시스템의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사고정보에 기반한 정보수집·관리 → 제품사고조사·원인분석 → 제품위험성평가 →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 개발 지원의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근래 불법·불량제품 유통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안전성조사 확대 및 유통업계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인증품목 재조정 계획안

	2014년	2015년	2016년
공산품	<p>자율안전확인 ▶ 안전품질</p> <p>온열시트,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키용구</p>	<p>자율안전확인 ▶ 안전품질</p> <p>건전지, 스케이트보드, 헬스기구, 수유파드</p> <p>안전품질 ▶ 관리대상 제외</p> <p>습기제거제, 간이 빨래걸이, 우산 및 양산, 모터 달린 보드, 바퀴달린 운동화</p>	<p>안전인증 ▶ 안전품질</p> <p>물놀이기구</p> <p>자율안전확인 ▶ 안전품질</p> <p>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p> <p>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 ▶ 관리대상 제외</p> <p>(자율안전확인)빙삭기, 미끄럼 방지타일 (안전품질)물탱크, 텐트, 안경테, 물안경, 스테인레스 수세미</p>
	<p>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p> <p>냉방기 및 제습기, 전동공구, 무정전 전원장치, 복사기, 전기청소기, 전자캐패기, 전기건조기, 전기소독기</p> <p>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p> <p>서비스기기, 편집기, 제분기, 오디오 프로세서, 전화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단말기,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모뎀 내장한 특정용도의 단말기</p>	<p>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p> <p>전자레인지, 전기가열기기, 자동판매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램프홀더</p> <p>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p> <p>전동형 롤스크린, 해충퇴치기, 팩시밀리 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에너지 저장장치, 노트북컴퓨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p>	<p>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p> <p>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격살충기,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가습기</p> <p>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p> <p>천공기, 영상전송기, 보풀 제거기, 영상프로세서, 구강청결기, 게임기구, 고주파월더, 전기집진기, 전기에어커틀, 과일껍질깎기</p>
전기용품	<p>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p> <p>냉방기 및 제습기, 전동공구, 무정전 전원장치, 복사기, 전기청소기, 전자캐패기, 전기건조기, 전기소독기</p> <p>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p> <p>서비스기기, 편집기, 제분기, 오디오 프로세서, 전화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단말기,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모뎀 내장한 특정용도의 단말기</p>	<p>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p> <p>전자레인지, 전기가열기기, 자동판매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램프홀더</p> <p>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p> <p>전동형 롤스크린, 해충퇴치기, 팩시밀리 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에너지 저장장치, 노트북컴퓨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p>	<p>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p> <p>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격살충기,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가습기</p> <p>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p> <p>천공기, 영상전송기, 보풀 제거기, 영상프로세서, 구강청결기, 게임기구, 고주파월더, 전기집진기, 전기에어커틀, 과일껍질깎기</p>

2. 제품안전관리제도 선진화

현행 인증대상 품목 중 저위험 제품에 과도한 안전성 검증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재평가하여 3개년에 걸쳐 인증품목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조정품목에 대해선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신제품이 적시에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용품의 품목 체계를 재분류하고, 모터사용, 고전압 또는 대전력 사용 등 특정요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부과방식을 도입하여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중금속(납, 카드뮴, 니켈), 가소제 등 안전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 포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3.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지난 3년간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혼동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쇼핑몰 성장 등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 중개자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도 정비할 예정이다.

4. 소통 · 협력 증진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다른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활제품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경영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계절별 사고 다발품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가 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던 공산품 8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등)을 '15년부터 환경부로의 이관 및 물티슈 안전기준을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다.

